
제1기 제17차 전국위원회

2026년 8월 30일(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5 : 00 ~

제17차 전국위원회 회의

회의 및 자료집 순서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 진행요원 지정

회순통과

안건 사항

1. 최고위원제 실시로 인한 당규 개정의 건
 2.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전국위원 명단

구분	명단
당대표	한창민
부대표	정혜연
당 소속 국회의원	(한창민)
광역 시도당위원장	송치용 최영규 (정혜연) 김보경 박형규 (*지역 가나다순)
사무총장	(김보경)
권역	전국위원
경기인천(1)	서정범
대전,충청,세종(2)	이훈 최혜선
서울(2)	이병은 고석균
영남(2)	국민수 (최영규)
호남제주(1)	박봉리
지명직 전국위원(2)	강점석 박환수
합계	15명



안건 사항

1. 최고위원제 실시로 인한 당규 개정의 건
 2.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

[안건 1] 최고위원제 실시로 인한 당규 개정의 건

[주문사항] 2기 지도체제 최고위원제 실시로 인한 당규 개정안을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당헌]

제4장 전국위원회

제9조(지위와 구성)

③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

·

·

11. 당의 정책 및 사업 등 주요한 결정

1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권한

2. 취지 및 경과

－제16차 전국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체제를 최고위원제로 전환할 것과 이에 따른 당헌 개정 당원총투표를 의결함.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이 가결되어 이에 따른 당규 개정이 필요함.

－이 외 당헌 사항에서 당규 사항으로 정할 것, 현행 당규 내에서 충돌하는 내용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3. 당규 개정안 및 주요 내용

－<사회민주당 당규 제1호 내지 제13호 일부개정안> : 별지 첨부

가. 당규 제1호 「당원」	-부대표를 최고위원으로 변경. -복당 신청 처리기한이 30일과 60일이 상존, 이에 30일로 정비함.
나. 당규 제2호 「당비」	-당헌 개정으로 직책당비 사항을 당규로 정해야 하기에, 당비 종류에 직책당비를 명시하고 체계를 정비함. 또한 관련 내용을 최고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다. 당규 제3호 「당원총투표」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를 최고위원회 발의로 변경하고 관련 사항 정비함.
라. 당규 제4호 「전국위원회」	-지명직 전국위원을 임명직 전국위원으로 표현을 정비함.
마. 당규 제5호 「집행기구」	-선출직 최고위원 2인, 당대표 분리 선출. -선출직 최고위원 선출 정수 이하일시 총원 절차 규정. -임명직 최고위원, 시도당연석회의 협의 거쳐 당대표 임명. -당대표 권한 대행 순서를 원내대표, 선출 최고위원 득표율 순으로 규정함.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장 임면 등 당무에 대한 최고위원회 협의 절차를 반영함. -처무규칙, 각급 집행기구 내부규칙에 관한 권한을 최고위원회로 함. -사무부총장, 각 부서실장 : 사무총장 제청-당대표 임면.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무직 비서 : 최고위원회 협의-당대표 임면. -그 외 정무직 당직자는 당대표 임면.
바. 당규 제6호 「지역조직」	-사고당부 지정, 비대위 설치 등 결정 권한은 최고위원회가 행사함.
사. 당규 제7호 「원내기구」	-의원총회의 역할과 권한 명확히 함. -전국위원회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국회 제출되는 법률안 심의 의결,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과 폐지 등 구체화. -1인 의원일 경우 원내대표 선출 거치지 않음을 명문화.
아. 당규 제8호 「당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체계를 최고위원회 체제에 맞게 정비함.

자. 당규 제9호 「선거관리규정」	-최고위원제에 맞게 선거관리 및 공직후보자 심사에 관한 권한 체계 정비함. -선관위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보완함. -선거 관리 관련 규정을 명확히 보완함.
차. 당규 제10호 「정책연구소」	-잘못된 조문 인용 등 바로잡음.
카. 당규 제11호 「재정 및 예산결산위원회」	-중앙예산결산위원장, 위원 ; 최고위원회 협의-당대표 추천-전국위 인준.
타. 당규 제12호 「중간평가제」	-중간평가위원 시도당위원장 1인을 최고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파. 당규 제13호 「회의규정」	-전국위원회 의장 불신임시 : 의장-최고위원, 부의장-당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 1인 -당대표 궐위시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대표 권한대행 순으로 함.

4. 의결안

-<사회민주당 당규 제1호 내지 제13호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안건 2] 제2기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의 건

[주문사항] 당헌 당규에 의거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실시안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주십시오.

1. 관련 규정

[당헌]

제9장 전국위원회 직속 기구

(...)

제37조(선거관리위원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6. 0. 00.>

1.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2. 선거효력의 판정권
3.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재 권한
4. 기타 당헌·당규로 정한 권한

제13장 보칙

제43조(의결정족수 및 선출방법) <개정 2024. 12. 30.>

②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당직과 공직후보자 선출 및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여야 성립한다. 다만, 당규로 이보다 높은 투표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

제46조(동시당직선거)

①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를 구성하는 모든 선출직 당직자의 선출선거는 동시에 진행한다. <개정 2026. 8. 28.>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6. 8. 28.>

2. 의결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의 주요 내용을 승인한다.

<사회민주당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주요 내용>

■ 선출 단위, 선거구, 선출 정수

선출 단위	선거구	선출 정수
당대표	전국	1인
최고위원	전국	2인
사·도당 위원장	각 사·도당(서울, 경기, 전북)	각 1인
전국위원	서울	2인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강원	5인
	인천	2인
	부산, 경상	2인
	전북, 전남, 제주	2인

※ 동시당직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그 선거일 전에 시·도당을 창당하거나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을 선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동시당직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출직 전국위원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가 400명 이하일 때 1명, 401명~800명일 때 2명을 선출하되, 801명 이상일 때 400명당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선거권자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선출한다

※ 광역시·도당이 창당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접한 다른 광역시·도당과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할 수 있다

■ 선출 방법

: 당원 1인 1표, 직접 투표, 주권당원 100%, 참여당원 30% 가중치 적용

1. 당대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과반 득표자 없을시 1, 2위 순위자 간 결선투표

—ARS투표는 1차 선거시 1일 실시

2. 최고위원

-당대표와 분리하여,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

3. 시·도당 위원장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과반 득표자 없을시 1, 2위 순위자 간 결선투표

4. 전국위원

-다수득표 순으로 선출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선출 일정

일시	본선거	비고
8/31(월)	제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9/1(화)~3(목)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9/4(금)	선거인명부 확정	
9/4(금)~6(일)	후보 추천 및 등록 마감	
9/7(월)	후보자 공고	
9/8(화)~9(수)	후보자 설명회(온라인)	온라인으로 진행.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9/10(목)~16(수)	선거운동	선관위 주최 당대표/ 최고위원 토론회 일정은 추후 공지
9/17(목)~21(월)	온라인투표	
9/22(화)	ARS 투표	ARS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만 실시
9/22(화) 오후 7시	개표	중앙당 당사에서 진행

일시	결선투표	비고
9/23(수)~24(목)	결선폭선투표	
9/25(금)~28(월)	온라인 투표	
9/28(월) 오후 7시	개표	중앙당 당사에서 진행

■ 후보 기탁금 및 추천인 수

후보	기탁금	추천인 수
당대표	200만 원	50명
최고위원	50만 원	30명
사·도당 위원장	30만 원	해당 선거구 당원 20명
전국위원	10만 원	해당 선거구 당원 15명

※ 기탁금 : 청년 후보 50% 감액, 사퇴시 반환하지 않음

■ 선거권, 피선거권

1. 선거권

-2026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당원

-투표값 : 주권당원 가중치 100%, 참여당원 가중치 30%

(주권당원 규정 : 7월 31일 기준, 6개월 전 입당, 최근 1년 이내 6회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2. 피선거권

1) 2026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주권당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정당법상 어떤 정당 당적도 가질 수 없는 법정 사유로 탈당 후 즉시 복당한 경우는 제외)

-투표 기간 현재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 탈당한 자로서, 제명확정 또는 탈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업무 위임 범위

-각급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는 중앙당 사무총국, 광역시도당 사무처 등에 위임할 수 있다